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0. 10 김성인 의원의 3

나. 회 부 일 자 : 2000. 10. 10

다. 상 정 일 자 : 2000. 10. 16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남 은 기 의원

나. 개정이유

- 의회의 보충발언과 질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다. 주요내용

- 보충발언을 1문 1답형식으로 개정(안 제33조)
-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전 까지 군수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 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는 24시간전 까지 제출 (안 제6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찬주)

-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본회의에서 보충발언을 1문1답 형식으로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규칙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지속되거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화순군의회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단서중 “신상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상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발언은 1문 1답 형식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6조 제4항중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p> <p>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 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p> <p>① - - - - - - - - - - - - - - -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문 1답형식으로 할 수 있다.</p>
<p>제66조</p> <p>①~③ 생략</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6조</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 - - - - - - - - - - -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